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장·위원장의 부당한 의원 발언금지·퇴장 징계>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87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수진 · 김 건 · 강선영 · 구자근 · 박준태 · 임이자
김예지 · 조정훈 · 박충권 · 김소희 · 안상훈 · 조승환
이달희 · 서지영 · 김종양 · 우재준 의원(16인)

2. 제 안 일 : 2024. 11. 1.

3. 회 부 일 : 2024. 11. 4.

※ 의안번호 : 518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회법」에서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원에 한하여 위원장은 제한적으로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정감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등 국회

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경고 또는 제지 ⇨ 발언금지 또는 퇴장)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부당하게 의원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킨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8의2.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부당하게 의원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킨 경우
9. ~ 16. (생략)	9. ~ 16. (현행과 같음)

회의의 질서유지권이란 회의장 안에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행사되는 권한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음.

「국회법」 제145조¹⁾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요건 및 단계적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²⁾에는 먼저,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함으로써 질서유지를 도모한 다음, 해당 의원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고,³⁾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음.

또한, 「국회법」 제10조 및 제49조⁴⁾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일반적

-
- 1)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2) 「국회법해설」에 따르면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란 ①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언을 하는 경우, ②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 ③ 발언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경우, ④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는 경우, ⑤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⑥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 ⑦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경우, ⑧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함(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p.664~665).
-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됨.
- 4)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포괄적인 직무 및 권한으로서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원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의정활동의 주체로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발언권, 동의(動議)권, 질문권·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등의 권한을 가짐.⁵⁾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문권·질의권 및 토론권을 포함한 의원의 발언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횟수·시간의 제한을 받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기는 하나 의원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특히, 의원의 표결권은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원의 권한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음.⁶⁾

그런데,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의 행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발언 금지 또는 퇴장⁷⁾을 명하거나 단계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원의 발언 금지

5) 성낙인, 「헌법학」(제24판), 법문사(2024), pp.441~443, 정호영, 「국회법론」(제3판), 법문사(2012), pp.161~163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마125 전원재판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 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6)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에 따라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또한,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에 따라 30일 또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의원의 발언권 및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7) 의원의 발언권 및 표결권은 회의장에서 행사되는 것이므로, 의원이 퇴장을 당하면 발언권 및 표결권

또는 퇴장을 명하는 경우⁸⁾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부당하게 의원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킨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 등 의원의 권한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사 측면과 의원의 발언권 및 표결권 등의 충분한 보장 및 존중 필요성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됨.

8) 예를 들어, 「국회법」 제10조 및 제49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